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심태섭
인천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tsshim@icc.ac.kr)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인 사례를 작성하여 실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세무조사가능성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세무조사가능성과 벌금의 상호작용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당국이 현재의 세무조사와 더불어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뢰인의 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 변수 이외에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세무대리인들은 외부의 압력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소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서론

세무대리인¹⁾들은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즉 처리하여야 하는 세무문제는 매우 구체적이데 비하여, 관련된 세법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또는 최종판단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전문가로서 의사결정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성실신고를 하여야 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서로 상충된 역할을 하여야 한다 (Cuccia, 1994).²⁾ 그러므로 세무대리인은 당면한 세무문제에 대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한편, 지나치게 납세자 편에서 세무조정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제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세법규정이 애매한 경우 세무대리인은 의뢰인과 세무당국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따른 기대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의뢰인과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은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경우, 납세자의 편에서 세무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의뢰인의 태도와 성실한 세무대리를 요구하는 세무당국의 제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두 요인의 크기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

논문 접수일 : 2003. 6 게재확정일 : 2004. 1

* 본 연구는 인천전문대학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세무대리인으로 하고 있다.

2) 우리 나라 세무사법 제1조의 2에서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두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인 세무조사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알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선 의뢰인의 태도와 세무당국의 제재가 동시에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의뢰인과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세무대리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³⁾ 이를 활용하여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세무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세무조사가능성의 효과를 비교·분석하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인 사례를 작성하여 실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세무조사가능성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

향은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세무조사가능성과 벌금의 상호작용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당국이 현재의 세무조사와 더불어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뢰인의 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 변수 이외에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세무대리인들은 외부의 압력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소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선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가설을 수립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2.1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개인적인 특성(경험, 교육수준, 성별 등)이

3) 미국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합리적인 이유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250(Internal Revenue Code §6694(a)),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0(Internal Revenue Code §6694(b))의 벌금이 세무대리인에 부과된다.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출발하였다.⁴⁾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세무대리인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Carnes et al., 1996).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의 심리적인 요인(지식, 문제해결능력, 태도 등)과 외부요인(의뢰인의 특성, 세무당국의 제재)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Roberts(1998)는 관련된 기존연구를 기초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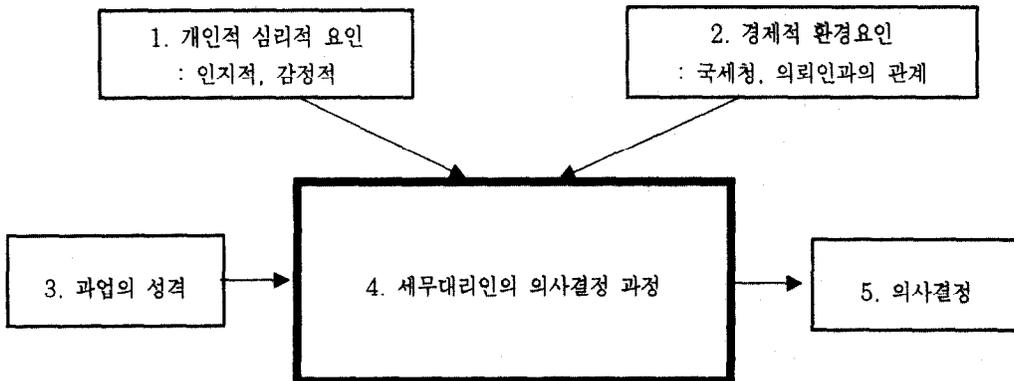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을 둘러싼 외부요인중 세무당국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세무조사가능성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와 당면문제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가설설정

본 연구는 우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세

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은 세무대리인보다는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개인업체이거나 소규모업체로서 회사내부에 경리담당부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인이 대신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세무조사가능성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세무조사가능성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기존연구의 결론은 명확치 않다. 즉 Roberts(1998)가 정리한 기존연구중 4편에서는 그 영향이 파악되었으나, 3편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었다. 기존연구에서는 세무조사가능성과 다른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어, 연구에 포함된 다른 변수에 의해 세무조사가능성의 효과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Roberts, 1998). 이에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대리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그림 1> 세무대리인의 경제적-심리적 의사결정 모형(Roberts, 1998)



4) 대표적인 연구로 Ayres et al.(1989), Carnes et al.(1996), 박춘래·김종원(2002)이 있다.

H1: 납세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⁵⁾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⁶⁾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Roberts, 1998). 그러나 Cuccia(1994)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결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인회계사들은 오히려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effort)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⁷⁾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 경향은 부분적으로 확인(limited support)되었다. Cuccia는 이러한 결과를 심리적 저항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와 같은 세무전문가의 경우 벌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하기에, 세무당국은 벌금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벌금이 갖는 심리적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derson and Cuccia(2000)는 세무대리인의 벌금에 대한 기존연구간의 결론이 서로 상충되며, 이는 벌금의 비경제적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이들은 벌금의 경제적 효과만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세무대리

인에 대한 벌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H2: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당면 세무문제에 대해 공격적인 의뢰인의 경우 관련 세무문제를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세무대리인에게 요구하므로, 세법규정이 애매한 경우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세무대리인간의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보다 민감하여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세무문제에 대한 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elleloid(1989)의 연구에서는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Spilker et al., 1999). Johnson(1993)

5) "세무조사가능성"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실제 세무대리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면 우선 세무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무조사결과 잘못된 세무조정사항이 발견된 후,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의뢰인에 대한 가산세와 별도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가능성이 벌금으로 연결된다면 복잡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가능성"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각각이 세무대리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6)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를 세무대리인의 공격성(aggressiveness)으로 표현하였다.

7) 비공인회계사(commercial preparers)집단의 경우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은 세무전문가가 의뢰인이 선호하는 세무처리와 관련된 판례를 평가하는 실험을 통하여, 피험자인 세무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판례를 그렇지 않은 판례보다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Cloyd and Spilker(1999)는 의뢰인의 요구가 세무대리인이 세무정보획득과정, 추가 판단 및 권고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세무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경향⁸⁾이 세무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세무문제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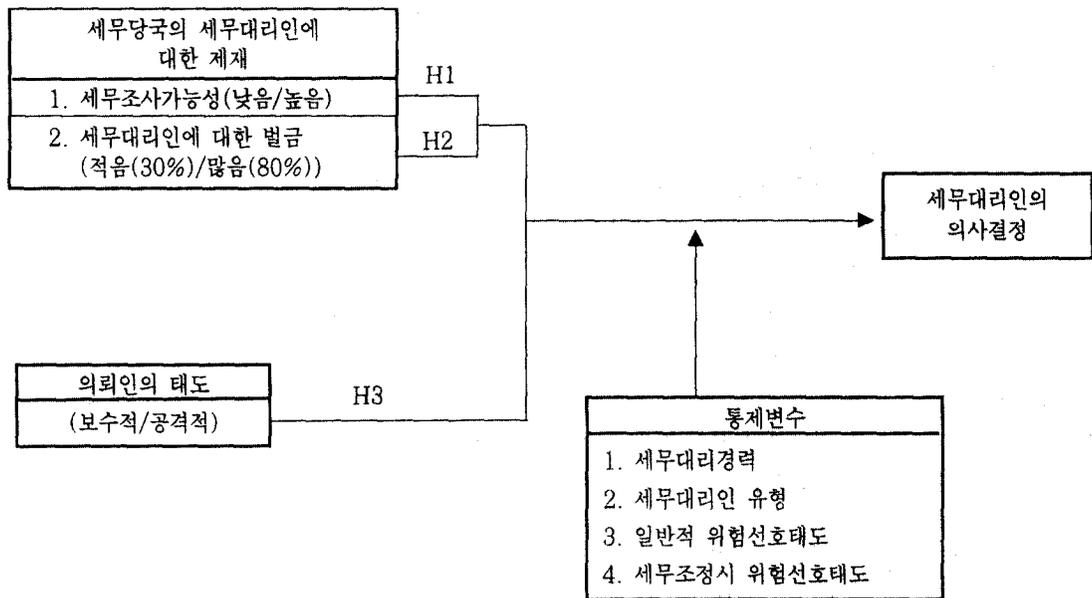
H3: 관련 세무문제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연구는 위의 세 변수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과도 파악하고자 한다.

2.3 본 연구의 연구모형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모형



8)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confirmation bias"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의 세 변수 이외에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인구통계적 특성 가운데 세무대리경력⁸⁾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 세무대리경력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Roberts, 1998), 이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세무대리인 유형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우리 나라 경우 세무사 이외에 공인회계사도 세무대리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일정기간 세무서에 근무한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 근무경력이 거의 없는 공인회계사와는 의사결정경향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세법규정이 애매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에 대한 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어(Carnes et al., 1996; 박춘래·김종원, 2002),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가 미치는 영향도 통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함으로서 연구의 유용성을 갖고자 한다. 우선 기존연구중 세무당국과 의뢰인이 세무대리인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⁹⁾ 이 환근(1998)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잠재적 벌칙가능성과 의뢰인의 중요성 및 공격성이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세무조사가능성의 효과를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세무대리인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세무당국이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활용가능한 수단인 세무조사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심리적 요인과 인구통계적 변수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나, 세무당국에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지 못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에 의한 자율신고를 강조함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세무신고에 대한 각종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세무당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납세자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매우 적어,¹⁰⁾ 세무조사는 그 정책적 실효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현진권, 2000). 또한 우리 나라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는 직무정지, 등록취소¹¹⁾ 등 지나치게 강도가 높아 오히려 실제 활용정도가 매우 적다(이환근, 1998). 이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비용을 높이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같은 금전적 벌칙을 강화하여 세무대리인의 성실세무신고를 유도하자는 주장이 있다(현진권, 2000; 이환근, 1998). 이에 본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세무당국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9) Roberts(1998)가 정리한 기존연구중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의뢰인의 요구를 동시에 연구한 것은 없다.

10) 우리 나라 전체 납세자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비율은 소득세의 경우 0.2~0.3%, 부가가치세는 0.1% 수준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조사선정비율 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현진권, 2000).

11) 현재 우리 나라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는 우선, 세무사법 위반으로 인한 2년 이내의 직무정지와 등록취소가 있다. 그리고 세무사회의 자율징계로 주의환기, 경고, 견책, 1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제명 등 5가지의 제재가 있다.

III. 연구방법

3.1 개요

본 연구는 실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세무사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포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는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험실 실험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실험에 쓰일 가상적인 사례를 설문지로 작성하고, 세무대리인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2 피험자

본 연구의 응답자로는 인천·부천·안양과 안산 지역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였다. 이 지역은 세무서당 세무대리인의 수가 비슷하며, 지역적으로 인접한 지역이다. 일정지역의 세무대리인을 응답자로 국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요인(예를 들어 지역별 세무대리인간의 경쟁의 정도, 세무당국의 입장의 차이 등)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3.3 가상적 사례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환근

(1998), 박춘래·김종원(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상적인 사례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가상적인 사례를 작성하였다.¹²⁾ 가상적 사례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제 세무대리인의 행동을 정확히 유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사례의 내용과 관련된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사례의 내용은 부록의 <설문지> 참조).

3.3.1 (주)한강 사례

이 사례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련된 사례이다. 소득세법 예규에서는 사용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만을 특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장학금을 추천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소득46011-3619, 1995.9.22). 그러나 모든 장학금 수령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 당 장학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 사례는 장학금수령자 모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가상적인 상황에서, 이 장학금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지의 여부를 피험자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였다.

3.3.2 (주) 해외통신 사례

이 사례는 해외파견도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채원으로 발령이 난 근로자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지와 관련된 사례이다. 관련 법인세법 예

12) (주)한강, (주)해외통신 및 한일철공소의 사례는 이환근(1998), (주)도시건축의 사례는 박춘래·김종원(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를 수정한 것이다.

규에서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만이 국외근로수당에 해당되어 월 150만원이 내의 금액은 비과세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3-3982, 1998.12.19). 그러나 해외에서 파견근무하는 도중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어 그 곳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된 경우, 파견근무기간동안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에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국외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응답자에게 요구하였다.

3.3.3 (주) 도시건축 사례

이 사례는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가 타 회사보다 많은 경우, 이를 사외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소득세법 예규에서는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 46011-21395, 2000.12.6).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예규에서는 비상근임원이 급여이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 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소득46011-10195, 2001.3.8.). 이에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거마비는 세무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다. 이 사례는 다른 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사외이사에 대한 거마비를 사외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응답자에게 요구하였다.

3.3.4 한일철공소 사례

이 사례는 개인사업자가 기계반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판단을 알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⑥). 이에 따라 기계설비가 노후되었거나 기능상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유로 기계를 대체한 경우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기계의 폐기가 아닌 기계반품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 사례와 같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기계반품에 따른 손실에 대해 응답자가 어떠한 판단을 할 지를 알아보았다.

위의 4가지 사례를 작성한 후 실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4명에게 사전 검토를 받았다. 사전 검토 결과 세무조정대상의 금액, 사례에 대한 표현 등을 수정하여 최종사례를 확정하였다.

3.4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3개의 처리변수(treatment variable), 4개의 통제변수와 종속변수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3.4.1 처리변수

3.4.1.1 세무조사 가능성

우리 나라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세무대리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은 “실제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조사 가능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경우로 나누어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측정하였다(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부록의 〈설문지〉 참조).

3.4.1.2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본 연구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무조정 한 결과가 세무당국에 의해 부인 당할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무대리인에게 부과되는 형태로 처리(operationalize) 하였다. 벌금수준은 많은 경우(해당금액의 80%가 세무대리인에게 벌금으로 부과되는 경우)와 적은 경우(해당금액의 30%가 세무대리인에게 벌금으로 부과되는 경우)로 나누었다(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부록의 〈설문지〉 참조).

3.4.1.3 의뢰인의 태도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인 의뢰인과 보수적인 의뢰인의 두 형태로 의뢰인의 태도를 처리하였다. 공격적인 의뢰인의 경우는 “본 세무문제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보수적인 의뢰인의 경우 “본 세무문제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인 귀하

에게 세법에 비추어 적절한 판단을 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부록의 〈설문지〉 참조).

위의 처리변수의 수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2×2의 총 8가지 조합의 사례를 마련하였다.¹³⁾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2×2 집단간(between-subjects) 실험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응답자는 처리변수의 수준이 동일한 사례에 대한 응답을 한다. 이에 따라 처리변수의 수준이 다른 사례를 피험자가 응답하는 집단내(within-subjects) 실험방법보다는 많은 수의 응답자가 필요하지만, 실험요구(demand characteristics)나 반복효과(carry-over effect)와 같은 집단내 실험방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3.4.2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위의 처리변수 이외에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 세무대리경력, 세무대리인 유형과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여, 결과분석시 이들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처리변수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세무대리경력은 세무대리인 개업연수로 측정하였으며, 세무대리인 유형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는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로 세무대리인의 일반적인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oung (1985)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로 측정하였다: “귀하는 현재 복권을 한 장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

13)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순서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문제의 순서를 바꾸어 24(4×3×2)가지 문제순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총 192가지(2×2×2×24)의 실험도구를 마련하였다.

다. 이 복권은 당첨될 경우 1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즉 0원). 이러한 복권의 가격이 5,000원일 경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최소한 몇 %가 되어야 이 복권을 구입하시겠습니까?” 만일 응답한 확률이 50%보다 큰 경우는 위험회피의 세무대리인이며, 50%이면 위험중립 그리고 50%이하인 경우는 위험선호형태의 세무대리인으로 파악하였다.¹⁴⁾ 두 번째로 세무조정시 세무조사위험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Carnes et al.(1996)과 박춘래·김종원(2002)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관련 세법의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을 공격적 세무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하게 세무조정을 하는 형태를 보수적 세무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세무조정하실 때, 위의 두 입장중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그 정도를 1~11사이의 한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여기서 11= “공격적인 세무조정”, 1= “보수적인 세무조정”을 의미함)”.

3.4.3 타 변수의 통제

실험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중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닌 변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3.4.3.1 의뢰인의 중요성

세무대리인에게 계속 기장과 세무조정을 의뢰하였거나, 많은 고객을 소개하여 주는 등 중요한 의뢰인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의뢰인을 중요한 의뢰인으로 한정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즉 “당 업체는 개업초기부터 귀하에게 계속 기장과 세무조정을 의뢰하여 왔으며, 대표이사는 그간 귀하에게 많은 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등 귀하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로 기술하였다.

3.4.3.2 문제의 순서

본 연구의 경우 피험자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순서가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는 위의 4가지 사례의 순서를 달리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하였다. 즉 24(4×3×2)가지의 문제순서가 다른 경우를 작성하여 문제순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3.4.3.3 판단금액의 크기

세무대리인이 판단하여야 할 금액의 크기도 세무대리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세무조정금액이 300~500만원 사이가 되도록 조정하여,¹⁵⁾ 판단금액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3.4.4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각 사례에서 세무대리인들이 어떠한

14) 일반적인 위험태도측정방법은 Selto and Cooper(1990)에 정리되어 있다.

15) 사례에 대한 사전검토시 세무대리인마다 중요한 금액의 기준에 대한 생각은 상이하였으나, 한 세무대리인이 1년간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초과하면 중요한 금액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 약 3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되어, 본 연구 사례작성시 이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삼았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의뢰인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는 11점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는 1점이 되도록 측정하였다. 이 측정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¹⁶⁾

번째 쪽에는 세무조정시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러 변수에 대한 처리(operationalize)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항목을 측정하였다.

3.5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두 번째 쪽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일반적인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쪽까지는 가상적인 네 가지의 사례를 기술하였다. 이어서 다섯

IV. 자료분석

4.1 자료수집내역과 응답자의 특성

4.1.1 설문지 배포와 회수

본 연구의 처리변수의 수준에 따라 8(2×2×2)가

〈표 1〉 설문지 회수 내역(단위: 매)

세무조사 벌금		의뢰인 공격성	보수적	공격적
		낮음	30%	
	7/1			10/1
	24			26
80%			35	36
			7/0	12/0
			28	24
높음	30%		37	34
			6/0	11/0
			31	23
	80%		38	35
			7/0	14/0
			31	21

주) 각 칸의 맨 윗칸: 총 배포 매수
 중간 칸: 미회수/불성실 응답 매수
 마지막 칸: 최종 분석에 사용된 매수

16) 이는 기존연구에서 세무대리인의 공격성(aggresiveness)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 사례의 조합을 마련하고, 4개 사례의 순서를 바꾸어 24가지(4×3×2)의 문제순서를 만들어, 총 192종류의 설문지를 마련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 배포와 회수에 세무회계를 전공한 학생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를 총 284매 배포하여 210매(회수율: 73.9%)를 회수하여, 불완전한 응답을 한 2매를 제외한 208매(분석율: 73.2%)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각 사례별 설문지 매수는 앞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응답자가 4개의 가상적 사례에 응답하는 데 20분을 약간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되어, 응답자들이 비교적 내용을 상세하게 읽고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4.1.2 응답자의 특성

설문지 회수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남자(응답자의 90.8%)였으며, 평균나이는 45.5세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70.7%는 세무사이었으며, 나머지는 공인회계사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세무대리인 개업연수는 평균 7.2년이었다. 응답자중 국제청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가 58.8%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18.9년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 사무실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4.2 처리변수에 대한 적절성 평가(manipulation check)

본 연구의 처리변수가 적절하게 처리(operation-
alize)되었나를 알기 위해, 응답자가 마지막 사례

를 답한 이후에 처리변수에 대해 추가로 확인질문을 하였다.¹⁷⁾ 우선 본 연구의 사례가 얼마나 애매하였는지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평균이 6.03으로, 응답자들은 본 연구의 사례를 약간 애매하다고 느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가 세무대리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수준이면 본 연구에서 작성한 사례가 세무대리인에게도 애매한 경우로 인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크기에 대해 얼마나 많다고 느꼈는가를 11점 척도로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8.96으로 다소 많다고 응답하였다. 벌금이 적은 집단(30%)의 경우(평균: 8.73)보다 많은 집단(80%)의 경우(평균: 9.18)가 벌금이 많다고 느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못했다($p=.159$). 이상의 분석결과 본 연구의 처리변수들은 비교적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3 자료 분석

4.3.1 종속변수의 기술적 통계량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편에서 의사결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기술적 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자료분석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중간입장에서 세무조정을 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각 응답자간에 편차가 있었으며, 각 사례별로도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 Hopkins et al.(2000)은 실험도구가 포함된 설문지와는 별도의 설문지를 첨부하여 처리변수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맨 마지막 사례와 페이지를 달리하고, 응답자에게 앞의 내용을 참조하지 말고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처리변수를 평가하였다.

〈표 2〉 종속변수의 기술적 통계량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주) 한 강	6.3798	3.6535
(주) 해외통신	6.5411	3.6798
(주) 도시건축	4.7356	3.4728
한 일 철공소	6.0000	3.7853
전 체	5.9087	2.1806

주) 1-의뢰인에게 불리, 11-의뢰인에게 유리

4.3.2 처리변수 및 통제변수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응답의 기술적 통계량을 이용하여 처리변수와 통제변수가 응답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예비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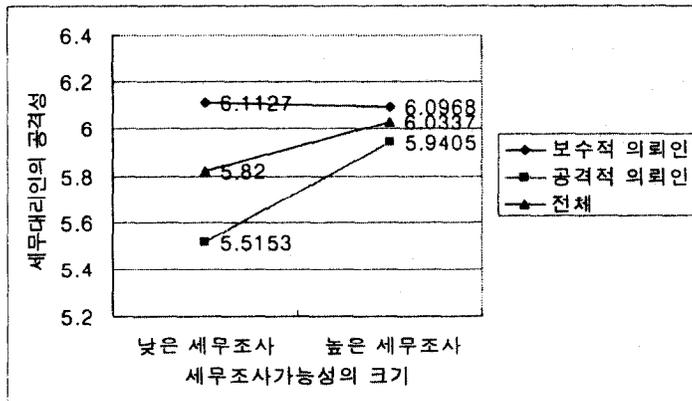
4.3.2.1 예비분석

본 연구의 처리변수가 응답자의 의사결정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분석단계로 수집된 자료의 기술적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의 고유한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사례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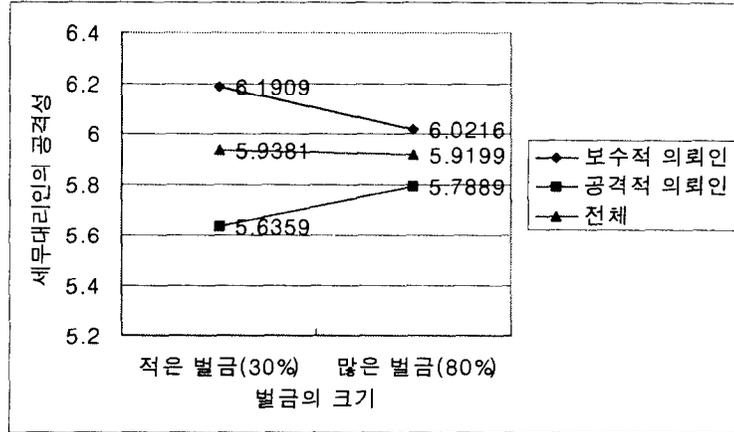
우선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의뢰인의 태도와 세무조사가능성별로 응답자의 의사결정 결과를 〈그림 3〉에 표시하였다. 〈그림 3〉에서 보면 세무조사가능성은 세무대리인 의사결정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3〉 세무조사가능성의 효과¹⁸⁾



18) 여기서 1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세무조정"이며 11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이다. 즉 점수가 증가할수록 세무대리인은 의뢰인 편에서 보다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림 4〉 벌금의 효과



보수적 의뢰인을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격적인 의뢰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가능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의 변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효과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전체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의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약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보수적인 의뢰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향과 같았으나, 공격적인 의뢰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의 정도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의 변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은 아니었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듯이 공격적 의뢰인

에 대한 세무조정시 세무조사가능성의 증가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응답자는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 경향은 우선, 의뢰인이 보수적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의뢰인이 공격적인 경우는 세무대리인은 그 고객을 계속유지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경향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저항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이론에 따르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세무 전문가들은 벌금이나 세무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더욱 더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¹⁹⁾ 이러한 경향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벌금이나 세무조사는 세무당국이 기대하는 억제효

19) Cuccia(199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제한적으로 확인(limited support)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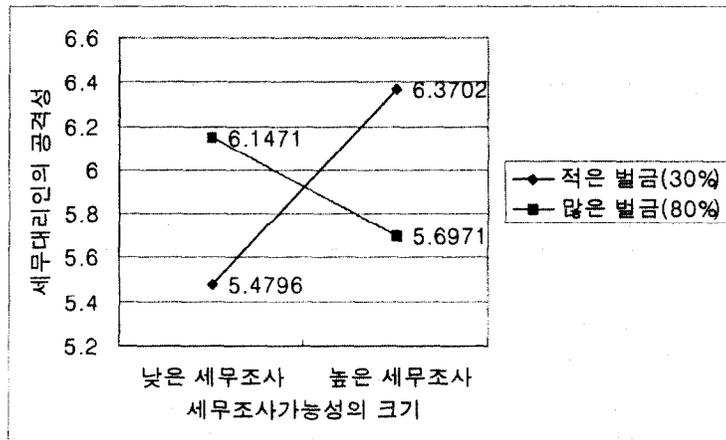
과뿐만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세무당국과의 게임에서 경쟁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보상(psychological rewards)효과가 있어, 서로 상충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Roberts, 1998). 이러한 현상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위의 두 그림에서 보면 공격적인 의뢰인의 문제를 처리할 때보다 보수적인 의뢰인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때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이 보다 공격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Duncan et al.(1989)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무전문가들은 의뢰인의 공격적인 요구를 누그러트리(moderate)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Duncan et al., 1989). 또한 Roberts(1998)는 이러한 결과는 의뢰인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을 설득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세무조사가능성과 벌금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세무조사가능성과 벌금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낮은 세무조사 가능성 하에서는 많은 벌금을 부과하여도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을 줄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높은 세무조사 가능성하에서 많은 벌금을 부과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과 <그림 4>의 경향과 다르다. 즉 "세무조사"와 "벌금"을 각 각 실시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심리적 저항으로 "세무조사"와 "벌금"이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을 줄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보듯이 "세무조사"와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는 세무대리인의 심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의사결정경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당국이 현재의 세무조사이외에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의사결정하는 경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감사위험과 벌금의 상호작용효과



4.3.2.2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사례를 사용하였기에, 각 사례가 갖는 고유한 특성(예를 들어, 각 사례의 애매한 정도)이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할 때 4가지 사례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각 사례별로 공분산분석을 하였다.

우선 4가지 사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하였다.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크기와 의뢰인의 태도를 처리요인으로 하였다. 또한 세무대리경력²⁰⁾ 세무대리인 유형²¹⁾ 세무대리인의 일반적 위험선

호태도²²⁾와 세무조정시 위험선호태도²³⁾를 공변량(covariate)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공분산분석결과 세무조사가능성과 벌금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이외의 처리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변량 가운데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일반적 위험선호태도 보다 세무조정시 위험선호태도가 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각 사례별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공분산분석 결과(전체 평균)

Source		SS	df	MS	F	p
주효과	세무조사가능성(A)	5.935E-02	1	5.935E-02	.015	.903
	벌금(B)	3.517E-03	1	3.517E-03	.001	.976
	의뢰인태도(C)	9.573	1	9.573	2.382	.124
상호작용효과	A×B	12.882	1	12.882	3.205	.075*
	A×C	4.524	1	4.524	1.126	.290
	B×C	2.371	1	2.371	.590	.443
	A×B×C	1.022	1	1.022	.254	.615
공변량	세무대리경력	1.929	1	1.929	.480	.489
	세무대리인 유형	3.609	1	3.609	.898	.345
	일반위험태도	25.039	1	25.039	6.230	.013**
	세무조정위험태도	113.258	1	113.258	28.181	.000***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적임

20) 세무대리 경력은 세무대리인 개업연수를 측정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21) 세무대리인 유형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 구분하였다.
 22) 일반적 위험선호태도는 위험회피형, 위험중립형 및 위험선호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3)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일반적 위험선호태도와 세무조정시 위험선호태도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0.07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도 않아(p=.289),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위험선호태도를 공변량으로 동시에 사용하였다.

〈표 4〉 공분산분석 결과(각 사례별)

Source		(주) 한강	(주)해외 통신	(주)도시 건축	한일 철공소	전체
주효과	세무조사가능성(A)					
	벌금(B)					
	의뢰인태도(C)	.055*				
상호 작용 효과	A×B				.043**	.075*
	A×C					
	B×C		.026**			
	A×B×C					
공변량	세무대리경력			.048**		
	세무대리인 유형		.099*			
	일반위험태도			.002***		.013**
	세무조정위험태도		.001***	.011**	.000***	.000***

주) 1.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적인 경우만 표시한 것임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적임

〈표 4〉에서 보듯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시 위험선호태도는 3개 사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이 이외에 각 사례별로 의뢰인태도((주)한강), 벌금과 의뢰인태도의 상호작용과 세무대리인 유형((주)해외통신), 세무대리경력과 세무대리인의 일반적인 위험선호태도((주)도시건축) 그리고 세무조사가능성과 벌금의 상호작용(한일철공소)이 각 사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V. 결론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사(세무사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포함)를 대상으로 가상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세무조사가능성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세무조사가능성과 벌금의 상호작용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당국이 현재의 세무조사와 더불어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뢰인의 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 변수 이외에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

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세무당국의 제재와 의뢰인의 태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응답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각 사례에 대한 응답시 고려한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8.5507)를 가장 많이 고려하여 의사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의 관심변수였던 세무조사 가능성(6.1659), 벌금(6.0534), 그리고 의뢰인의 요구(6.1268)는 상대적으로 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외부의 압력보다는, 위험선호태도와 같은 세무대리인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세법규정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사례를 이용한 연구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첫 번째로 적은 수의 가상적인 사례를 이용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실제 세무대리인이 다루는 모든 문제를 대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처리변수가 응답자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각 사례별로 차이가 있었기에,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은 당면한 문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각 사례의 모호한 정도(level of ambiguity)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못하였다.²⁴⁾ 또한 적은 수의 가상적인 사례를 이용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던 처리변수의 영

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던 한계도 있다. 두 번째로 간단한 가상적인 사례를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우선 세무조정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세무조정금액의 크기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두 가지 수준으로 단순화하였기에, 실제 사용한 가능한 다양한 형태나 수준의 벌금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지역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이를 우리나라 전체 세무대리인에 대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 지역별로 세무대리인간의 경쟁정도가 다른 등 여러 면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론은 모든 세무문제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 경향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연구중 실제 사례를 이용한 연구가 많지 않기에, 실제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례를 이용하여 연구할 경우 보다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보다 정교히 할 경우, 보다 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세무에 대한 지식정도, 세무대리인과의 개인적인 친분, 세무대리인 교체경험여부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24) Carnes et al.(1996)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응답평균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한 18개의 사례의 모호성 정도(level of ambiguity)를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수가 적고, (주)도시건축 사례를 제외하고는 응답평균간에 큰 차이가 없어 각 사례의 모호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이를 추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경우도 의뢰인과의 개인적인 친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 여부 등 여러 가지로 정교히 할 경우, 보다 분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정대상 금액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벌금수준도 다양하게 하여 벌금의 영향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납세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정도의 낮은 수준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벌금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본 연구에서 다른 벌금 이외에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등 다른 제재수단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수준의 강화와 벌금의 신설의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춘래 · 김종원(2002), "세무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1(2), 89-109.
- 이환근(1998),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험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현진권(2000), "우리 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 *재정포럼*, 45, 88-121.
- Anderson, S. E. and A. D. Cuccia(2000), "A Closer Examination of the Economic Incentives Created by Tax Return Preparer Penaltie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2(1), 56-77.
- Ayres, F. L., B. R. Jackson, and P. S. Hite(1989), "The Economic Benefits of Regulation: Evidence from Professional Tax Preparers," *The Accounting Review* 64(2), 300-312.
- Carnes, G. A., G. Harwood, and R. Sawyers(1996), "The Determinants of Tax Professionals' Aggressiveness in Ambiguous Situations," *Advances in Taxation*, 8, 1-26.
- Cloyd, C. B. and B. C. Spilker(1999), "The Influence of Client Preferences on Tax Professionals' Search for Judicial Precedents, Subsequent Judgments and Recommendations," *The Accounting Review*, 74(3), 299-322.
- Cuccia, A. D.(1994), "The Effects of Increased Sanctions on Paid Preparers: Integrating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1), 41-66.
- Duncan, W. A., D. LaRue, and P. M. J. Reckers (1989),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Selected Economic and Noneconomic Variables on Decision Making by Tax Professionals," *Advances in Taxation*, 2, 91-106.
- Helleloid, R. T.(1989), "Ambiguity and the Evaluation of Client Documentation by Tax Professional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1(1), 22-36.
- Hopkins, P. E., R. W. Houston, and M. F. Peters (2000), "Purchase, Pooling, and Equity Analysts' Valuation Judgments," *The Accounting Review*, 75(3), 257-281.
- Johnson, L. M.(1993),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Advocacy on Preparers' Evaluation of Judicial Evidence,"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5(1), 1-22.

- Roberts, M. L.(1998), "Tax Accounts' Judgement/ Decision-Making Research: A Review and Synthesi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1), 78-121.
- Selto, F. H. and J. C. Cooper(1990), "Control of Risk Attitude in Experimental Accoun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9, 229-264.
- Spilker, B. C., R. G. Worsham, Jr. and D. F. Prawitt (1999), "Tax Professionals' Interpretations of Ambiguity in Compliance and Planning Decision Context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1(2), 75-89.
- Young, S. M.(1985), "Participative Budgeting: The Effects of Risk Aversion and Asymmetric Information on Budgetary Slack,"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2), 829-842.

부 록: 설문지

1. (주) 한강 사례

〈사례내용〉

한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甲씨의 장남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甲씨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주)한강으로부터 장학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장학금 수령자 총 20명중 10명만이(주)한강 종업원의 자녀였으나, 나머지 10명은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예규에서는 사용자가 당해 업체의 근로자의 자녀만을 특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을 추천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처럼 모든 장학금 수령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 위 장학금이 甲씨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중요성〉

(주)한강의 경우 개업초기부터 귀하에게 계속 기장과 세무조정을 의뢰하여 왔으며, 대표이사는 그간 귀하에게 많은 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등 귀하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

〈의뢰인의 태도 항목〉

(1) (주)한강의 대표이사는 위의 사항에 대해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다소의 위협을 감수하

더라도 납세자인 甲씨에게 유리한 세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주)한강의 대표이사는 위의 사항에 대해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세법에 비추어 적절한 판단을 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항목〉

(1) (주)한강은 소비성 서비스업종이라 최근(주)한강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 (주)한강은 제조업체로서 최근 경기의 어려움으로 이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1) 위의 항목에 대해 귀하가 세무신고를 한 내용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부인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가산세와는 별도로 부인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직접부과가 됩니다.

(2) 위의 항목에 대해 귀하가 세무신고를 한 내용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부인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가산세와는 별도로 부인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직접부과가 됩니다.

〈세무대리인의 판단 측정 항목〉

이 상황에서 甲씨 장남의 장학금을 甲씨의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떠한 세무조정을 하실 것인지를 아래의 1~11사이의 한 곳에 표시(O 또는 V)하여 주십시오.(여기서 11=귀하가 위의 장학금을 甲씨의 과세소득에서 "확실히 제외하겠다"(甲씨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이며, 1="확실히 포함시키겠다"(甲씨에게 불리한 세무조정)를 의미함)

확실히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겠다 (甲에게 불리)	확실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겠다 (甲에게 유리)
1 2 3 4 5 6 7 8 9 10 11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 — — — — — — — — — — —

** 이하의 사례에서는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주)한강의 사례와 동일함. **

2. (주) 해외통신 사례

(주)해외통신은 급증하는 동남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선 해외하청회사의 기술지도를 위해 乙씨를 싱가포르에 파견하였고, 별도 팀이 乙씨 파견 2개월후에 해외현지법인인(주)Asia-Telecom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현지에 나가 있는 乙씨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인사발령내어, 乙씨는 계속하여 싱가포르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견근무기간동안의 乙씨 급여를 국외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떠한 세무조정을 하실 것인지를 아래의 1~11사이의 한 곳에 표시(O 또는 V)하여 주십시오.(여기

서 11= 국외근로소득(비과세소득)으로 "확실히 처리하겠다"(乙씨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이며, 1="확실히 처리하지 않겠다"(乙씨에게 불리한 세무조정)를 의미함)

확실히 과세소득으로 처리하겠다. (乙에게 불리)	확실히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겠다 (乙에게 유리)
----------------------------------	----------------------------------

1 2 3 4 5 6 7 8 9 10 11 — — — — — — — — — — — —

3. (주) 도시건축 사례

서울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주)도시건축은 여의도에 거주하는 丙씨(전 대학 건축학과 교수, 정년퇴임 후 일정한 소득은 없음)를 사외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주)도시건축은 丙씨에게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매회 회의참석차 실제로 회사에 내사할 경우에는 거마비로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丙씨는 최근에 사외이사로 임명되었고, 그간 총 5회 이사회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주)도시건축의 거마비는 인근 비슷한 규모의 회사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丙씨에 대한 거마비를 丙씨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떠한 세무조정을 하실 것인지를 아래의 1~11사이의 한 곳에 표시(O 또는 V)하여 주십시오.(여기서 11= 귀하가 丙씨의 거마비를 丙씨의 과세소득에서 "확실히 제외하겠다"(丙씨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이며, 1="확실히 포함시키겠다"(丙씨에게 불리한 세무조정)를 의미함)

확실히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겠다 (丙에게 불리)	확실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겠다 (丙에게 유리)
1 2 3 4 5 6 7 8 9 10 11	
— — — — — — — — — — —	

기계를 반품한 지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丁씨는 반품한 기계를 대체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입의사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귀하는 기계반품에 따른 손실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세무조정할 것인지를 아래의 1~11사이의 한 곳에 표시(○ 또는 V)하여 주십시오.(여기서 11= 귀하가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확실히 인정하겠다”(즉 丁씨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이며, 1=“확실히 인정하지 않겠다”(즉, 丁씨에게 불리한 세무조정)를 의미함)

4. 한일철공소 사례

丁씨가 운영하는 한일철공소에서 구입한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매번 제작사와 함께 수리를 해 보았지만 완전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기계를 제작사측과 협의하여 당 기계의 취득가액 40,000,000원중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 30,000,000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당 기계를 제작사가 회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확실히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丁에게 불리)	확실히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 (丁에게 유리)
1 2 3 4 5 6 7 8 9 10 11	
— — — — — — — — — — —	

(차) 미지급금	30,000,000	(대) 기계장치	4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250,000		
잡손실(기계반품손실)	5,750,000		

In Ambiguous Situations, the Effects of Audit Probability, Tax Preparer Penalty, and the Aggressiveness of Clients on Tax Preparers' Decision Making

Tae Sup Sh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1) audit probability, (2) tax preparer penalty, and (3) the aggressiveness of clients affect tax preparers' decision making in ambiguous situations. This study used a 2×2×2 experiment on Korean tax preparers using questionnaires. Each tax preparer was presented with four ambiguous tax scenarios. For each scenario, the subjects were asked to indicate that they would report the tax issue in the manner favorable to their clients. Based on the data analysis, the interaction of the audit probability and the penalty has an effect on tax preparers' decision making, while the aggressiveness of clients does not. In addition, the risk preferences of the subjects have impacts on their decision making. Also,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ink the intent of tax codes more important than the audit probability, the penalty, and the aggressiveness of clients. Therefore, in this study, tax preparers make their decisions up to their own conviction of tax code and their own propensities, rather than to the sanctions of tax authority and the requests of clients.

Key words: tax compliance, tax preparer, penalty, audit.

* Professor, Department of Tax and Accounting, Incheon City College.